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61
----------	-------

발의연월일 : 2025. 11. 6.

발 의 자 : 신정훈 · 장종태 · 이병진
박홍배 · 차지호 · 이정문
이해식 · 부승찬 · 안도걸
김성희 · 서미화 · 복기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등 금고 업무를 위하여 은행 등을 금고로 지정하고 이러한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할 경우 지정, 변경, 금고 업무의 약정기간,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중요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공고해야 할 중요사항 중에는 지정된 금고에 예치할 현금 등에 대한 약정이율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는 금고를 지정·변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임에도 관련 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해당 금고의 약정이율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금고 지정에 대한 금융기관간 과도한 협력사업비 경쟁 등이 지방자치단체 보유 현금 등에 대한 약정이율보다 더욱 중요한 경쟁기

준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금고를 지정·변경할 때 현금 등의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을 공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약정이율에 대한 적정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현금운용 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법률 제 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정, 변경”을 “지정, 변경, 약정이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고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생략)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u>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u>	② ----- ----- <u>-----지정, 변경, 약정이율</u> ----- ----- ----- ----- ----- ----- -----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